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의뢰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법보좌관 신정우
건명	장지춘 소유물건(2025타경176)
감정서번호	가람 1425-02-0005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가람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KAARAM APPRAISAL CO., LTD.
TEL:033)744-7794 FAX:033)743-7793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이우교

(인)

(주)가람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지사장 이강민

(인)

감정평가액	오천삼백사십육만삼천원정(₩53,463,000.-)			
의뢰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법보좌관 신정우	감정평가목적	경매	
채무자	-	제출처	경매1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장지춘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3.25	2025.03.25	2025.04.11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원/㎡)	금액(원)
	토지	828	토지	828	-	53,463,000
		이	하	여	백	
합계						₩53,463,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김세호	(인)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소재 “지구2리 마을회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 (토지)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

기호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개별공시지가 (원/㎡)
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39-2	649	전	계획관리	전	11,800
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39-4	0.5 (장지춘 지분)	도로	계획관리	도로	17,200
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39-6	71 (장지춘 지분)	도로	계획관리	도로	17,200
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39-8	30.5 (장지춘 지분)	도로	계획관리	도로	17,200
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39-21	56 (장지춘 지분)	도로	계획관리	도로	17,200
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59-7	21 (장지춘 지분)	도로	계획관리	도로	17,200
합계		82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3월 25일임.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본건은 2025년 3월 25일 현장을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의 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감정평가의 조건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기타 참고사항

- 1)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확인결과 본건 기호(1)토지에 별도의 허가 신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람.
- 2) 본건 기호(2~6)은 공유지분 토지 중 “장지춘” 소유 지분에 대한 평가로서, 지분의 위치를 특정지을 수 없어 전체 가격을 산출한 후 소유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음.
- 3) 본건은 인접 토지와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로서, 정확한 경계 및 현황 확인을 위해 필요에 따라 측량이 요구되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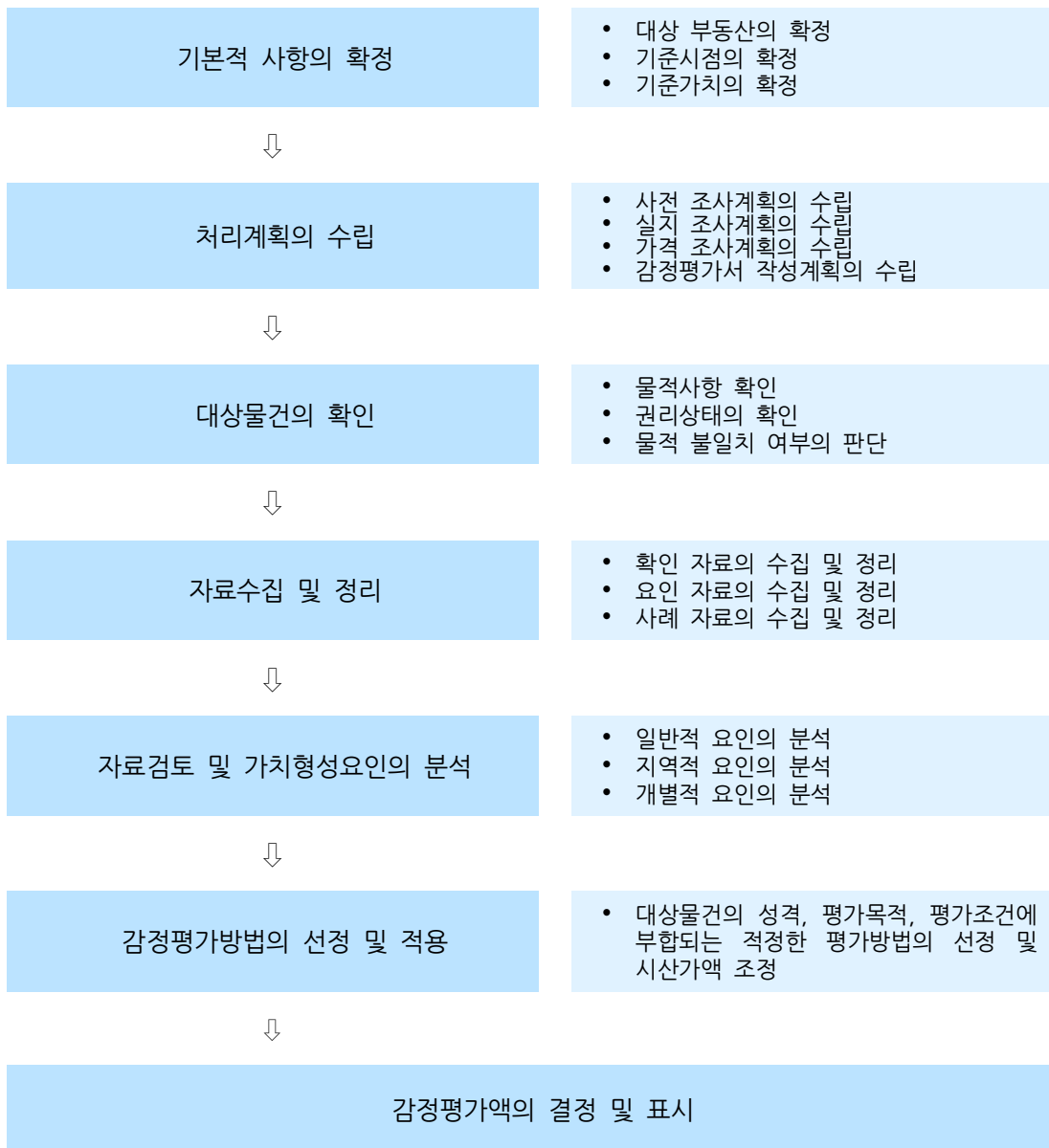
다.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본건의 토지는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 절차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근거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

1. 인근 거래사례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면적(㎡) 건물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 상 도로조건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실거래가액 (원)	사례단가(원/㎡) 당해개별지가 (원/㎡)
#1	지구리 ***-*	전	662	계획관리 전	사다리 세로(불)	2024.05.25	45,000,000	68,000
			-			-		11,800
비고	사례는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2	지구리 ***-*	대	555	계획관리 단독주택	부정형 세로(불)	2022.06.15	129,000,000	112,000
			84.51			2010.04.09		47,900
비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 건물 개요: 경량철골구조(사용승인일: 2010.04.09), 면적: 84.51㎡ ■ 토지 추정단가: $[(129,000,000\text{원} - (1,200,000\text{원}/\text{㎡} \times 23/35 \times 84.51\text{㎡})) / 555\text{㎡}] \approx 112,000\text{원}/\text{㎡}$							

※ 사례의 거래가격 및 거래시점은 해당 자료의 출처를 기준하였음.

2. 인근 평가전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 조건	토지단가 (원/㎡)	기준 시점	평가 목적	기준시점 개별공시지가 (원/㎡)
#ㄱ	지구리 **	전	2,145	계획관리 전	세로 (불)	60,000	2021.02.15	경매	15,000
#ㄴ	지구리 **	대	771	계획관리 단독주택	세로 (가)	103,000	2025.02.21	경매	51,800
#ㄷ	지구리 ***-*	도로	75.5	계획관리 도로	세로 (가)	34,000	2025.02.21	경매	17,2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평가

가.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로서 다음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공시기준일: 2025년 1월 1일)

비교 표준지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조건	형상 지세	표준지 공시지가 (원/㎡)
A	지구리 39-17	662	전	전	계획관리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지	12,700
B	지구리 87	767	대	단독주택	계획관리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지	52,800

나.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과 기준시점이 시간적인 불일치로 인하여 가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보정하는 절차로서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음.

비교 표준지	시·군·구 (산정기간)	용도 지역	시점 수정치	비고
A,B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5.01.01~2025.03.25)	계획관리 지역	0.173% (1.00173)	2025.01.01 ~ 2025.02.28 : 0.115 2025.02.01 ~ 2025.02.28 : 0.065 $(1 + 0.00115) * (1 + 0.00065 * 25/28)$ ≒ 1.00173

※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지역요인의 비교

결정의견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라. 개별요인의 비교

■ 개별요인의 비교항목(농경지대(전))

조 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등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등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등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등
	경작의 편부	형상 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의 비교치

본건 기호	비교 표준지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A	1.00	1.00	0.95	1.00	1.00	0.950
결정의견		본건 기호(1)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획지조건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주택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경 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등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의 비교치

본건 기호	비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2~6	#B	1.00	1.00	1.00	1.00	0.33	1.00	0.330
결정의견		본건 기호(2~6)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행정적조건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5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30241-36538, 1991.12.28), 대법원판례 (98두6067(1998.7.10), 92누16300(1993.9.10))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내 유사지역의 매매사례, 평가전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2)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가) 비교사례의 선정

본건 기호	표준지 기호	비교사례 선정
1	A	#ㄱ
2~6	B	#ㄴ

■ 선정 사유

인근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중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평가가격 및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건과 비교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선정된 비교사례

선정된 비교사례는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조건 또는 기준가치 등이 해당 감정평가와 유사하고, 기준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감정평가된 사례임.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 조건	토지단가 (원/㎡)	기준 시점	평가 목적	기준시점 개별공시지가 (원/㎡)
#ㄱ	지구리 **	전	2,145	계획관리 전	세로 (불)	60,000	2021.02.15	경매	15,000
#ㄴ	지구리 **	대	771	계획관리 단독주택	세로 (가)	103,000	2025.02.21	경매	51,8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비교사례 기준 표준지 가액과 기준시점 표준지 가액의 격차율 산정

■ 비교표준지 A

비교사례	구분	사례단가(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율 (①/②)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원/㎡)					
#ㄱ	① 사례기준 표준지 가액	60,000	1.05848	1.000	1.208	76,719	6.030
A	② 기준시점 표준지 가액	12,700	1.00173	-	-	12,722	

비교사례 기준 표준지 가액 산출근거	시점수정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2021.02.15 ~ 2025.03.25) 계획관리지역 지가변동을 적용함.					
	지역요인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개별요인	표준지는 비교사례 대비 자연조건 및 획지조건에서 우세함.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00	1.05	1.15	1.00	1.00	1.208	

■ 비교표준지 B

비교사례	구분	사례단가(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율 (①/②)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원/㎡)					
#ㄴ	① 사례기준 표준지 가액	103,000	1.00077	1.000	1.000	103,079	1.949
B	② 기준시점 표준지 가액	52,800	1.00173	-	-	52,891	

비교사례 기준 표준지 가액 산출근거	시점수정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2025.02.21 ~ 2025.03.25) 계획관리지역 지가변동을 적용함.					
	지역요인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개별요인	표준지는 비교사례와 개별요인 유사함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 비교사례를 종합분석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 거래동향, 거래사례, 평가전례, 공시지가의 현실화정도, 지역의 개발정도 및 주위환경의 변화, 기타 지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가장 현실성 및 타당성이 있는 가격에 접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음.

본건 기호	표준지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	A	6.03
2~6	B	1.94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text{시산가액(원/㎡)} = \text{표준지 공시지가(원/㎡)}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 \times \text{그 밖의 요인}$$

기호	비교 표준지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시산가액 (원/㎡)
1	A	12,700	1.00173	1.000	0.950	6.03	72,878	73,000
2~6	B	52,800	1.00173	1.000	0.330	1.94	33,861	34,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

가. 비교사례의 선정

■ 비교사례 선정 및 그 사유

대상과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으며, 이용상황 등에서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 가능한 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본건 기호	비교사례 선정
1	#1
2~6	#2

■ 선정된 비교사례

선정된 비교사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이고, 기준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거래된 사례임.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면적(㎡) 건물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 상 도로조건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실거래가액 (원)	사례단가(원/㎡) 당해개별지가 (원/㎡)
#1	지구리 ***-*	전	662	계획관리 전	사다리 세로(불)	2024.05.25	45,000,000	68,000
			-			-		11,800
비고	사례는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2	지구리 ***-*	대	555	계획관리 단독주택	부정형 세로(불)	2022.06.15	129,000,000	112,000
			84.51			2010.04.09		47,900
비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 건물 개요: 경량철골구조(사용승인일: 2010.04.09), 면적: 84.51㎡ ■ 토지 추정단가: $\{129,000,000\text{원} - (1,200,000\text{원}/\text{㎡} \times 23/35 \times 84.51\text{㎡})\} / 555\text{㎡} \approx 112,000\text{원}/\text{㎡}$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결정의견	본 비교사례는 실지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사정보정치	1.000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 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음.

비교 사례	시·군·구 (산정기간)	용도 지역	시점 수정치	비고
#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4.05.25~2025.03.25)	계획관리 지역	0.808% (1.00808)	2024.05.01 ~ 2024.05.31 : 0.091 2024.06.01 ~ 2024.06.30 : 0.086 2024.07.01 ~ 2024.07.31 : 0.127 2024.08.01 ~ 2024.08.31 : 0.087 2024.09.01 ~ 2024.09.30 : 0.102 2024.10.01 ~ 2024.10.31 : 0.108 2024.11.01 ~ 2024.11.30 : 0.057 2024.12.01 ~ 2024.12.31 : 0.045 2025.01.01 ~ 2025.02.28 : 0.115 2025.02.01 ~ 2025.02.28 : 0.065 $(1 + 0.00091 * 7/31) * (1 + 0.00086) * (1 + 0.00127) * (1 + 0.00087) * (1 + 0.00102) * (1 + 0.00108) * (1 + 0.00057) * (1 + 0.00045) * (1 + 0.00115) * (1 + 0.00065 * 25/28) = 1.0080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비교 사례	시·군·구 (산정기간)	용도 지역	시점 수정치	비고
#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2.06.15~2025.03.25)	계획관리 지역	2.525% (1.02525)	2022.06.01 ~ 2022.06.30 : 0.275 2022.07.01 ~ 2022.07.31 : 0.248 2022.08.01 ~ 2022.08.31 : 0.196 2022.09.01 ~ 2022.09.30 : 0.176 2022.10.01 ~ 2022.10.31 : 0.148 2022.11.01 ~ 2022.11.30 : 0.051 2022.12.01 ~ 2022.12.31 : 0.042 2023.01.01 ~ 2023.12.31 : 0.363 2024.01.01 ~ 2024.12.31 : 0.956 2025.01.01 ~ 2025.02.28 : 0.115 2025.02.01 ~ 2025.02.28 : 0.065 $(1 + 0.00275 * 16/30) * (1 + 0.00248) * (1 + 0.00196) * (1 + 0.00176) * (1 + 0.00148) * (1 + 0.00051) * (1 + 0.00042) * (1 + 0.00363) * (1 + 0.00956) * (1 + 0.00115) * (1 + 0.00065 * 25/28)$ ≒ 1.02525

※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을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을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음.

라. 지역요인 비교

결정의견	대상토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의 비교항목(농경지대(전))

조 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등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등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등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등
	경작의 편부	형상 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의 비교치

본건 기호	비교 사례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1	1.03	1.05	1.00	1.00	1.00	1.082
결정의견		본건 기호(1)토지는 비교사례 대비 접근조건 및 자연조건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주택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경 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등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의 비교치

본건 기호	비교 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2~6	#2	1.00	0.94	1.00	1.00	0.33	1.00	0.310
결정의견		본건 기호(2~6)토지는 비교사례 대비 접근조건 및 행정적조건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text{토지 시산가액} = \text{사례단가(원/㎡)}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

기호	비교 사례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시산가액 (원/㎡)
1	#1	68,000	1.000	1.00808	1.000	1.082	74,170	74,000
2~6	#2	112,000	1.000	1.02525	1.000	0.310	35,597	3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 규칙 제14조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동 규칙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 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본건의 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기호	사정면적 (㎡)	공시지가기준법 (원/㎡)	거래사례비교법 (원/㎡)	결정단가 (원/㎡)	결정된 토지가액 (원)
1	649	73,000	74,000	73,000	47,377,000
2	0.5	34,000	36,000	34,000	17,000
3	71	34,000	36,000	34,000	2,414,000
4	30.5	34,000	36,000	34,000	1,037,000
5	56	34,000	36,000	34,000	1,904,000
6	21	34,000	36,000	34,000	714,000
합계	828	-	-	-	53,463,000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분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53,463,000	공시지가기준법
합계	53,463,000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m ²)		감정평가액(원)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39-2	전	계획관리지역	649	649	73,000	47,377,000	
2	동 소	39-4	도로	계획관리지역	0.5 707x--- 707	0.5	34,000	17,000	매각지분 갑구1번 장지춘지분중 일부 (707분의 0.5)
3	동 소	39-6	도로	계획관리지역	71 267x--- 267	71	34,000	2,414,000	매각지분 갑구1번 장지춘지분중 일부 (267분의 71)
4	동 소	39-8	도로	계획관리지역	1 61x- 2	30.5	34,000	1,037,000	매각지분 갑구1번 장지춘지분중 일부 (2분의1)
5	동 소	39-21	도로	계획관리지역	56 62x-- 62	56	34,000	1,904,000	매각지분 갑구1번 장지춘지분중 일부 (62분의 56)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m)		감정평가액(원)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6	동 소	59-7	도로	계획관리지역	1 42x- 2	21	34,000	714,000	매각지분 갑구1번 장지춘지분중 일부 (2분의1)
합 계								₩53,463,00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소재 "지구2리 마을회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토지 :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2~6)토지 :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토지 : 기호(2~6)토지를 통하여 진출입함.
- 기호(2~6)토지 : 본건이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6)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돼지,개, 닭,오리,메추리:2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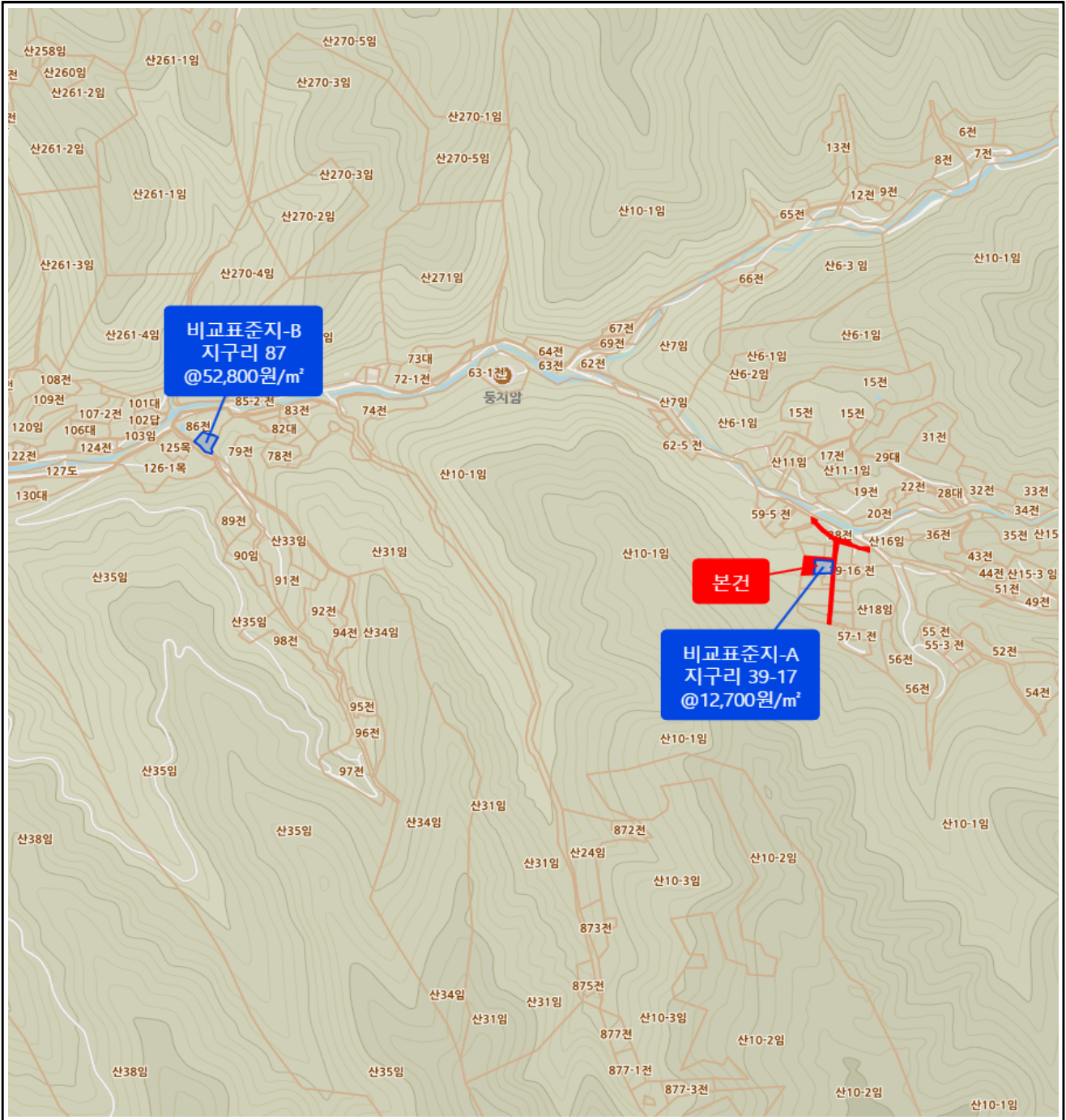
미상임.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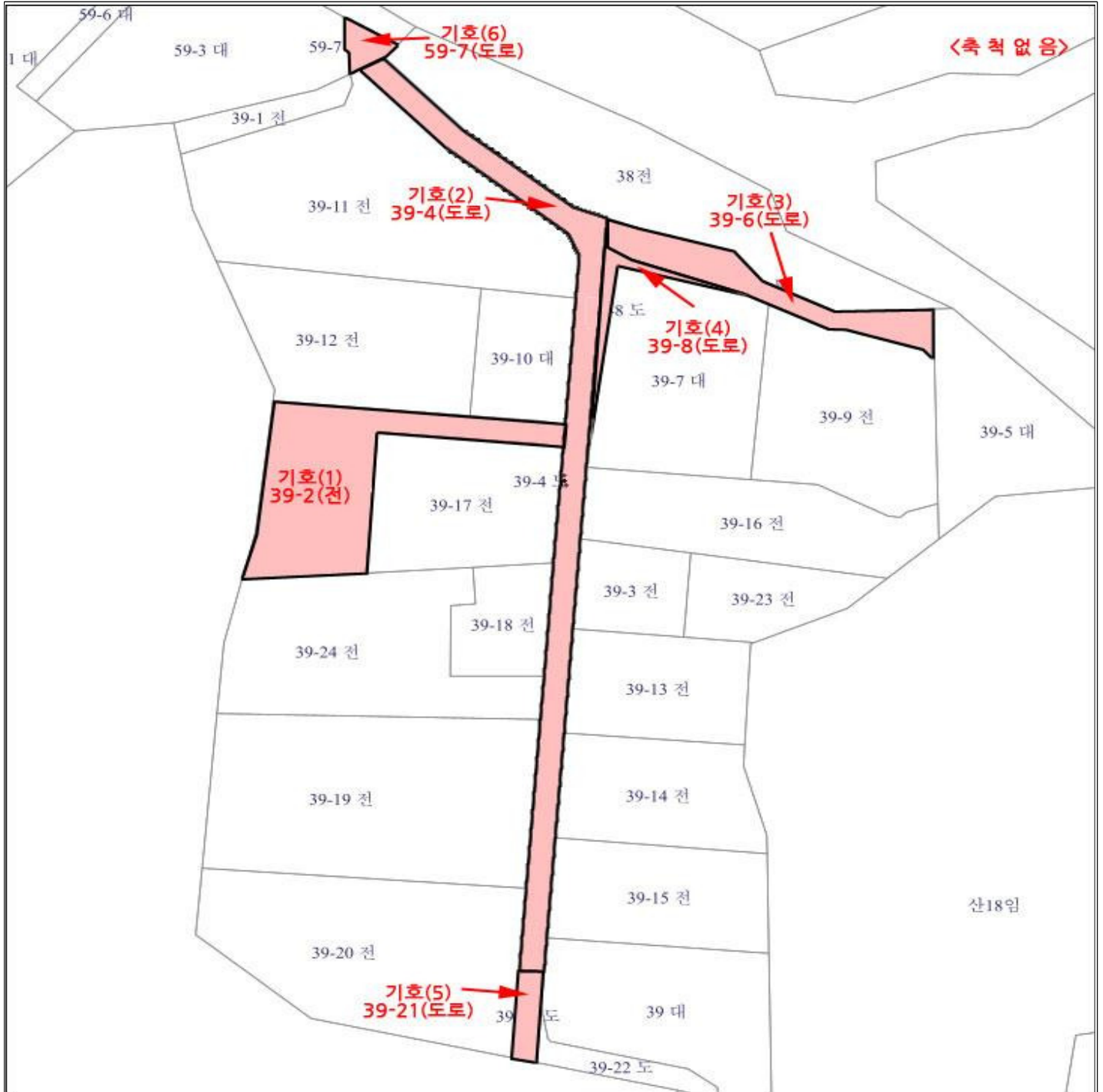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39-2 외



지 적 개 황 도



사 진 용 지



기호(1)



기호(1)



기호(1)



기호(2,5)

사 진 용 지



기호(2,4)



기호(3)

사 진 용 지



기호(6)